

3회 여성통일한마당 평가(안)

일시 : 2003년 8월 16일 오전 8시

장소 : 경희대학교 노천극장

주최 : 통일연대 여성위원회(전여농, 전여대협, 민주노동당, 자주여성회, 반미여성회)

참석 : 200여명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사회 - 자주여성회 기획위원장 박미향

대회사 - 반미여성회 회장 이미혜

내빈소개 - 범민련 여성선생님(박정숙, 김선분, 박선애, 한기명)

연대사 - '미군기지 필요없다 여자들 모임' (일본)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보고 및 환영식 - 전 전여농 회장 김순옥

정치연설 1 - 부경여대협 의장

공연 - 반미여성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정치연설 2 - 전북여농회장 강다복

공연 - 청보리 사랑

여성평화선언문 낭독 - 민주노동당 종로지구당 위원장 이선희

-> 민중의소리 기사.  
(여성의소리)

평가

- 전야제가 없고 본대회만 있었던 2003년 815 행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전 집회를 집행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토요일 근무 때문에 지방에서 참석한 회원들은 본 대회 이후 지방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애초 목표보다 조직되지 않았다.

< 500 >

- 집회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된 것은 음향 시스템 준비 부족 등도 있었지만 오전 집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미군기지 필요없다 여자들 모임'의 연대사와 깃발에 연대의 인사를 쓰는 순서, 청보리 사랑의 공연 등은 참석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 예산 >

예산 20만원

현금 12만원

현금 8만원

<중상 결과 보고>

지난 9월 5일 전남대학교에서 9기 전여대협 임시 중상을 진행했습니다.  
전여대협 의장님, 부경여대협 의장님, 목포대 총여학생회장님, 경희대 총여학생회장의 참어로 9기 전여대협 임시 중상을 진행했습니다.  
보고안건으로 전여대협 통일선봉대 활동 보고, 8월 14~17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대회 참가 보고, 9월 1~3일 남북청년학생대표자회의 참가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논의안건으로는 먼저 하반기 사업계획을 토론했습니다.  
78월에 대한 각 단위의 평가를 간단히 진행하면서 각 단위의 계획들을 공유하고 이미 제출했던 초안을 약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1년나기를 수립하면서 계획했던 여학생운동 토론회와 관련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9월 중 각 단위의 의견을 들어 여학생운동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전여대협 중집 간부에 대한 한총련 대의원 추천 여부를 묻고 추천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더불어 한총련 강령과 규약이 여학생운동 단위도 잘 포괄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단은 그에 대해 공감하면서 임시 중상을 마쳤습니다.

<호주제 폐지 관련>

1. 9월 20일(토) 오후 2~4시 한강 시민공원 청소년 광장 및 여의도 국민은행 앞(대한주택보증 앞)  
호주제 폐지, 평등가족 실현 시민한마당

- 2. 10월 3일 회의 보고  
후원금 형태로 각 참여단체 분담금 5만원  
행사 분공  
-코스프레: 역사에서 홀출한(?), 주체적인 여성을 표현하는 옷차림하는 것  
-문선하기: 어떤 노래(2곡 정도 해야함)로 누가 할 것인지  
-알뜰장터: 판매 및 꾸미기, 천막 등 구하기

✓ 노래 개사: 바뀌를 호주제 폐지의 내용을 담아 바꾸는 것  
-깃대 구하기:  
✓ **플래쉬 제작: 9/15까지** → 연관을 해야함.  
**대학별 포스터 붙이기**

다음회의 9월 15일 늦은 7시  
여성축제 기자회견 9월 25일(목)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 3. 준비흐름  
-각 대학에 포스터 붙이기  
-대학별 의식화 및 조직화  
-각 대학별 대중사업과 맞물려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호주제 폐지 거리 마당사업(2군데 잡아서 유인물 나누고 스티커 설문하는 식이면 어떨까?)  
-9월 20일, 10월 3일 조직화/10월 3일 마당사업  
-한총련 대의원 선언 관련  
-과학생회 호주제 폐지 선언 조직화

정장희  
함양동  
승실  
  
포인(서지님)  
서민  
  
영대  
경복  
동국  
경신  
경인  
육신  
  
동아  
부신  
경신  
경인  
육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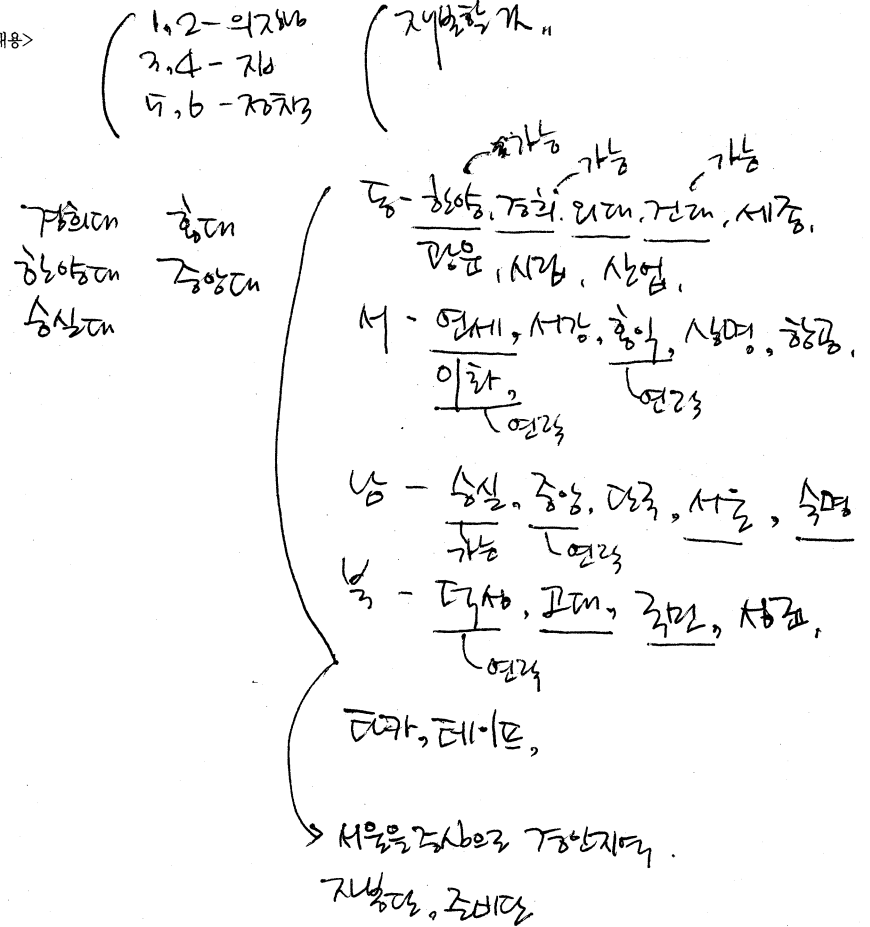
지민  
"서민"님  
  
전대  
전대  
전대

<중집 9월 조직운영 일정>

27차 28차 9월 28일 오전, 10시. 중집간부회의, 선거 준비

<중집 학습 관련>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혁명소설 총대

<지도사업 내용>



## 1> 호주제 피해 사례

결혼한 지 18년 되었다. 아들을 못 낳고 초3, 중2, 고2년 딸만 셋 있는데, 남편이 아들을 버리고 외도를 했다. 주위로부터 입양 권유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딸만 셋 낳아 시어머니가 아들을 버려자 남편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 작년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 나는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매스컴에서도 아들산호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피임수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고 키울 능력이 없다. 어지도 호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자의 권리가 동등해지면 이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남편은 원래 결혼하기 전에 아들을 선호하지 않았다. 남편이 나이가 들어 번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로부터 남편이 아들 낳는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누워있는 상황인데, 내가 잘 해주니까 더 이상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대수술을 받으셔야 했는데 수술하기 전 보호자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아버지를 불러오란다. 아버지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병원에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딸인 내가 대신하겠다고 의사에게 말했다. 그러나 의사는 아버지와 남편 다음은 아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딸의 '사인'은 받아 줄 수가 없다고 했다. 딸만 둘인 우리 집의 사정 얘기를 하며 어머니의 실질적인 보호자인 내가 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다고 해도 무조건 아버지를 불러오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나는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등록을 볼 때마다 불쾌하다. 혼자 살고 있어 나이가 50이 다되어 가지만 오빠가 호주로 되어 있어,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한다. 동생 학비 지원하느라, 결혼 못하고 이제까지 혼자 살아왔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재산을 오빠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지만 만약 내가 계속 오빠 호적에 남아 있으면 나의 재산은 오빠한테 갈 것 같다. 나이가 50이 다된 상황에서 오빠가 더 이상 호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혼하지는 5년 되었고, 아이에 대한 친권은 내가 갖고 있다. 나는 호적을 만들 수 있지만, 아이는 호적에 올릴 수 없다고 한다. 아이가 있는 남자와 3년 정도 사귀었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10억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데, 만약 재혼하게 되면 재혼한 남편과 그 아이에게 내 재산이 가는 것은 아닌가? 재혼했을 때 상속권이 재혼한 남편의 자녀에게도 상속이 가게 될 텐데, 재혼해서 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고 재산상속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심장질환이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성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내가 아이의 호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혼하고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고 재혼해서 아이를 1명 낳았다. 현재 남편도 전 남편 아이를 본인 호적에 올리고 아이의 성도 변경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딸리 방법이 없어 비참함을 느낀다. 현재 주민등록상에도 그 아이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아이가 법적으로 구가 될 수 없는 것을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현재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아이의 성을 변경하고 남편호적에 아이를 올릴 수 있도록 호주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남편도 호주제폐지운동에 동참하고 싶어 한다.'

## 2> 호주제란?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서,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사회의 가부장 의식과 억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전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피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서,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됩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호주제와 호적제도는 밀접적인 관계가 아닌, 호적편제방식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호주제의 존재와 상관없이 신분증명제도로서의 호적은 필요하고,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호적의 편제기준과 편제범위를 새로 정하면 됩니다.

## 3>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i 호주가 시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차-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서 좁게는 가족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반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도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2 혼인한 여성의 남편호적 입적(민법 제826조 3항) 및 자녀의 아버지 호적 입적(민법 제781조)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여성과 자녀는 남편호적에 입적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가에 입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풍조를 만들어나고, 모기에 입적한 자녀에 대해 차별의식을 발생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이혼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자녀라도 호적을 함께 할 수 없고, 단지 자녀는 '동거인'으로 기록될 뿐입니다. 전 남편의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게 될 경우로 자녀의 성씨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변경할 수 없어 새 아버지와 다른 성씨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까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남편은 처의 동의없이 혼인 외 자녀 입적 가능하다. 처는 남편의 동의 필요(민법 제784조)

이는 호적의 주인이 '호주'이며, 호적은 부계혈통만을 이어가는 가를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의 혈통이 아닌 자녀는 호적상 주인의 허락을 필요로 한다는 데서 연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은 부부평등관에 위배되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를 차별하게 되고 남편이 호적입적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자녀가 입적할 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4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만 인정(민법 제781조)

이는 부계혈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모계혈통을 무시하는 여성차별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놓은 나라는 없으며, 우리나라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만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하고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이 따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 4> 호주제 바로알기

1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제도가 아닌가요?

이는 잘못된 지식으로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가 없었으며, 전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여성을 종속적인 역할로 위치 짓는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성립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호주제는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즉 국가를 하나의 가족으로 보고 친왕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징하고 가정에 대해 절대적인 복종을 하듯이 친왕에 대해서도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기 위하여 만든 제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우리 사회에는 중국의 종법제도가 존재해왔는데, 이러한 두 개의 외래제도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호주제와 같은 가부장제도가 형성되었을 뿐입니다.

2 호적과 족보는 어떻게 다른가요?

호적은 민법상의 호주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이고, 족보는 문중의 가계를 기록한 사적인 기록부입니다. 이렇듯 호적과 족보는 아무 상관도 없으며, 족보는 문중의 기록으로 계속 보존할 수 있습니다.

3 호주제가 폐지되면 가족관계가 왜해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가족관계에서 호주의 역할은 유명무실하며, 호주는 단지 호적 편제기준자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호주제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존재하는데, 호주제가 없어도 다른 나라의 가족과 가족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서 가족이 얼마나 인정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서 이혼율을 들 수 있는데, 호주제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가 폐지한 일본, 스위스 보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높습니다. 오히려 호주제로 인하여 가부장적 사고가 부부갈등을 조장하고, 가족해체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평등한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4 호주제가 폐지되면 상속이나 연금수혜는 어떻게 하나요?

현행법상 호주라 하여 재산상속에서 우월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하거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고, 아무런 혼란이 없습니다. 증종재산의 상속은 무관하게, 증종인의 자격에 기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종 연금 역시 각 연금법에 정한 자격에 기초하여 받게 되어 있으므로 호주제 폐지와는 무관합니다.

5 호적제도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현재 증이호적 대신 호적이 진신화됨으로써 호적 편제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프리가 구축되어 호적 전환이 용이해졌습니다. 대법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시간은 약 3년, 비용은 약 240억원이 소요(1인적과 기본가족별 동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가족제도와 사회를 민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